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!

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광진구 제2선거구 출신,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입니다.

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이 조례안은 조합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제출 서류로 규정함으로써,

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조합원의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.

○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

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
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잘
살펴주시고, 시민의 삶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
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
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